

제 973 호

1983. 7.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22 공 보 관 전 명 호

전 화 : 72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25-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273 호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3

◎ 훈 령

제 592 호 : 서울특별시경찰국예산집행심의회의규정 13

제 593 호 : 서울특별시경찰국문서통제규정개정규정 18

제 594 호 : 서울특별시경찰국수사본부운영규정개정규정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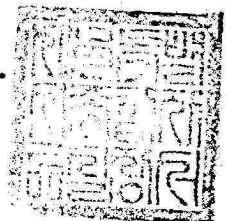
◎ 고 시

제 328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고시 33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29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허가	33
제 330 호 : 육류연동가격고시	34
제 331 호 :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 (면적정정) 고시	34
제 33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35
제 333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36
제 334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 정	37
제 335 호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37
제 336 호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41
제 337 호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46
제 338 호 :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한일은행분구) 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50
제 33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50

◎ 공 고

제 366 호 : 제 2 종전기공사면허갱신공고 (제 4 차)	51
제 370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완료	52
제 371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공사완료공고	53
제 372 호 : 서울역 - 서대문제 1 구역제 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을 위한공람공고	53
제 374 호 : 건설업 (전문공사) 면허취소	54
제 37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55
제 376 호 : K·S 표시정지처분공고	56
제 377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행정처분	56
제 378 호 :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공고	57

◎ 구청공고

제 46 호 : 여의도지번변경확정공고	57
----------------------	----

◎ 사 령

◎ 회 보



규 칙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3.7.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 교 육 규 칙 제 273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중 “관계국, 과장 및 교육구
청장”을 “관계국, 과장, 교육구청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 8 조 제 1 항 중 “과장 및 교육구
청장”과 “(교육구청장은 제외)”
를 각각 “과장, 교육구청장 및 사
업소장”과 “(교육구청장 및 사업
소장제외)”로 한다.

제 9 조 제 2 항 중 “주관국장 및 교
육구청장과 주관과장”을 “주관국
과장, 교육구청장 및 사업소장”으
로 한다.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14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및 제 15 조
제 1 항 중 “각과장 및 교육구청장”
을 “각과장, 교육구청장 및 사업소

장”으로 한다.

제 14 조 제 4 항 중 “주관과장 및 교
육구청장”을 “주관과장, 교육구청
장 및 사업소장 그리고”로 한다.

제 17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과장, 교육구청장 및 사업
소장은 예산 성립후 즉시 세입
예산 월별 또는 분기별 징수제
퇴서 (제 13 호 서식)와 세출예산
월별 또는 분기별 지출 계획서
(제 13 호 서식)를 작성, 사업
별 운영계획서 (제 13 호의 2 서
식)를 첨부하여 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제 2 항 중 “각 과장 및 교
육구청장”과 “(제 15 서식)”을
각각 “각 과장, 교육구청장 및 사
업소장”과 “(제 15 호의 서식)”
으로 한다.

제 20 조 제 1 항 중 국, 과장 및 교
육구청장”을 “국, 과장, 교육구청
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 21 조 제 1 항 중 “각 국, 과장 및
교육구청장”을 “각 국, 과장, 교육
구청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 2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2 조 (예산의 배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과장의 합의를 받아, 예산배부서 (제 18 호 서식) 로서 배부하고, 지출원에게 전도 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구청장에게 배정된 예산의 그 소속 청.소의 장에게 배부할 때에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한다.

제 25 조 제 1 항 및 제 3 항중 “주관과장 및 교육구청장”을 “주관과장, 교육구청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 28 조 제 1 항중 “각 국장 및 교육구청장”을 “각 국장, 교육구청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제 2 항중 “주관국장 및 교육구청장”을 “주관국장, 교육구청장 및 사업소장, 그리고”로 한다.

제 11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2 조 (교육재산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① 교육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 (이하 “총괄자”라 한다) 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교육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 가 이를 관리한다.

1. 관리자

가. 기본재산, 교육구청 관할 구역외의 보통재산 및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재무과장나.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청.소의 장. 다만, 국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청소년직업학교 및 중학교는 그 관할 교육구청장.

다. 교육구청 관할 구역내의 보통재산은 교육구청장.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총괄자가 직접 관리 처분할 수 있다.

2. 분임관리자

가. 국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청소년직업학교 및 중학교의 장

③ 관리국장은 제 2 항 각호에 규정된 교육재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 112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12 조의 2 (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자는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총괄자는 교육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교

육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교육재산을 다른 관리자에게로 변경 지정하게 하거나, 총괄자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자는 관리자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므로써 보통재산으로 되는 교육재산을 재분류하고, 그 처리방법을 지시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자는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13 조에 제 3 항 내지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상의 기재사항을 재산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

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20 조의 규정을 제 1 항으로 하고 제 2 항 내지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재산관리자가 한다. 다만, 영제 71 조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기부채납 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은 관리자가 연 1 회 이상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 범위내에서의 사용 여부

3.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4. 재산의 전대 및 관리권 처분 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1 조중 “관재과장은”을 “당해 재산의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 128 조에 제 3 항과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과표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평정할 수 있다.

1. 교육의 진흥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교육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네스코 단체, 스카우트 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 주관단체,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공법인, 공익법인에 교육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3. 200 제곱미터 이하의 잡종 재산인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재산 가격이 1,000 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외한다.
 4. 청사의 구내재산을 직원 후생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 ④ 전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 128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8 조의 2 (매각 재산 대금 납부) ①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과 교환자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대금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연분로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은행 일반대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시 보증금으로 대금의 1할과, 1회 분납금으로 대금의 2할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 의한 은행일반대출 이자율이 영 제 69 조에서 정한 이자의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환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환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체결시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최종회 분납금 납부시 대체충당한다.

제 128 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8 조의 3 (증감평조정) ① 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매계약 체결후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약정에 따라 처리하되, 증감평된 대금은 계약시 가격으로 정산한다.

② 증감평된 토지 및 건물 대금은 증감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 128 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연체 이자를 가산 징수 혹은 지급한다.

제 128 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8 조의 4 (연체요율)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대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금에 대하여 연 2 함의 연체이자를 연체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의 체결 및 사용허가시에 정하여야 한다.

제 129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9 조의 2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영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재산의 연간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정한다.

1.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 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공공용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8 분 이상으로 할수 있다.

2. 제 128 조의 제 3 항 제 1 호 내지 제 2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표가액의 5 분이상, 제 3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표가액의 1 할이상, 제 4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표가액의 8 분이상으로한다.

3. 전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평정 가격의 5 분 이상으로 산정할수 있다.

제 129 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9 조의 3 (건물 대부로 산출 기준) 건물의 대부로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건물을 총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단층건물

1 층은 부지평가액의 전부

지하실은 부지 평가액의 3
분의 1

나. 2 층건물

1 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2 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 3 층이상건물

1. 2층은 부지평가액의 각
각 2 분의 13 층이상 및 지하실은 부지
평가액의 각각 3 분의 1

제 129 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9 조의 4 (손해보험가입)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기
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규정하여야 한다.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
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건가
액의 손해보험을 교육각을 수령
인으로 하여 손해보험회사에 가
입하여야 한다.2. 교육감이 이미 손해보험등에 가
입한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
가 받은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의 보험료 상당액을 교육
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9 조의 5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9 조의 5 (변상금의 징수) ①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재산을 점유하거나, 사
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
산에 대한 대부료의 100 분의 120
에 상당한 금액에 그 재산을 점유
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유기간이 5 년 이
상인 경우에는 5 년으로 한다.②제 1 항의 대부료 상당액을 산정하
기 위한 재산가격은 변상금을 징수
하기로 결정한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 13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0 조 (대부료 및 사용료 납기) ①
교육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이하
“대부료”라 한다.) 는 대부 계약체
결 및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 초년분 및 기
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1 개월 이내
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부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을 허용
할 수 있다.②제 1 항의 대부료는 납입고지서에 의
하여 납부고지한다.

(3) 계약종료의 여도에 있어서의 대부분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분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1 조중 “관재과장과”를 “총괄자와”로 하고, 제 132 조 제 1 항 및 제 133 조 제 1 항중 “관재과장”을 “총괄자는”으로 하며, 제 132 조의 2 중 “관재과장을” “총괄자”로 한다.

제 134 조중 “그때마다”를 “당해월중 변동 사항을 익월 10 일까지”로 한다.

별표 제 3 제서식중 제 13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 13 호의 2 서식 “사업별운영계획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 3 제서식중 제 15 호의 2 서식 “세출예산추산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연체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연체요율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제 129 조의 5에 의한 변상금을 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변상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 128 조 제 3 항 제 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 13 호 서식)

세입 (세출) 예산 원별 또는 분기별 정수 (지출) 제 회 세

과				예산액	제원별	과 (단위 : 천원)															
과	항	세항	목			제 1 분 기			제 2 분 기			제 3 분 기			제 4 분 기						
						1.	2	3	제	4	5	6.	제	7	8	9	제	10	11	12	제
					제																
					보 조 금																
					특 정 재 원																
					일 반 재 원																
					제																
					보 조 금																
					특 정 재 원																
					일 반 재 원																
					제																
					보 조 금																
					특 정 재 원																
					일 반 재 원																

(주) 1. 관별로 작성하여 과마다 집계한다.

2. 세입에 있어서는 재원별란을 삭제한다.

세출예산추산부						
사업명		목표량	사업개요	실	적	
과목	판·합·세합		(판)	(합)	(세합)	
	예산구분					
예산액	당	조				
	1 회	정				
* 집행내역 *						
월	일	적	요	추산액	추산액	산제

훈 령

서울특별시경찰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훈령제 592 호

서울특별시경찰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경찰국소관예산의 효율적 운동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65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경찰국예산집행심의회 (이하 “ 심의회 ” 라 한다) 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동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월, 이동, 전용과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규모 변경, 설제변경, 계약방법변경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지명 경쟁 또는 수익계약의 사전심의

6.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운동과 변경에 관한 사항

7. 예산회계법령에서 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조정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

2. 법정경비 (인건비, 제세) 의 충당을 위한 예산의 이용, 전용등에 관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

3.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조 (적용대상기관)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경찰국 및 직할대, 경찰서에 적용한다.

제 4 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 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경무계장, 기획계장, 감찰계장,

경리제장, 장비보급제장, 통신관리제장이 된다.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의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무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간사) 심의회의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두되 간사는 경리제장이 되며,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심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의) ①심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심의회의는 년 2 회 3 월과 9 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의는 서면으로 할 수 없다.

제 8 조 (심의요구 절차등) ①각과·

시·직할대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 2 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제과·시·직할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심의효과) ①심의회의의 심의에 회부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재심의) 심의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 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세부지침) 심의회의의 운동 및 심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 1 호 서식 〉

회 의 록

안 건

의 건

사 유

별 첨

위 원

198

위 원 장

(서명)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별지 제 2 호 서식 〉

의 안 번 호	제 호
심 의	198
년 월 일	제 차 심 의 회

회 제 명	
사 업 명	
안 건 명	

제 출 자	
제 출 일 자	198

1. 의 결 주 문

2. 제 안 사 유

3. 주 요 골 자

4. 참 고 사 항

가. 관 제 법 령:

나. 관 제 기 관 협 조:

다. 기 타 사 항:

서울특별시 경찰국 문서통제 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훈령제 593호

서울특별시 경찰국 문서
통제규정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경찰국 문서통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경찰국, 경찰서, 파출소에서 취급하
는 문서를 조정, 통제하므로서 사
무를 간소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문서통제반의 설치) ① 경찰
국 및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문서
통제반을 둔다.

② 통제반 직원 배치는 서울특별시
경찰국 민원봉사실 운영규정 (서울
시에규 제 414 호) 에 따른다.

제 3 조 (분임통제관) 경찰국 문서분
임통제관 (이하 “ 통제관 ” 이라한다.)
은 민원봉사실 경위가 경찰서에
있어서는 민원봉사실장이 문서 통

제관이 된다.

제 4 조 (문서통제반의 업무) , 문서통
제반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포함한 해당관서의 전반적인
문서를 통제한다:

1. 문서의 접수 배부 및 발송에
관한업무
2. 기안시행문의 통제
3. 대외 및 상급관서의 보고 승
인 문서의 독촉
4. 자체보고 통제업무
5. 회보발간
6. 규정위반 공문서 처리
7. 각종 우편물의 접수 배부 및
발송업무

제 2 장 문서접수및배부

제 5 조 (접수 및 배부요령) 경찰국및
경찰서에 접수되는 문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일반 공문서는 문서처리인 (별
지제 1 호서식) 을 문서의 알맞은
빈자리에 찍고 문서접수대장 (별
지제 2 호서식) 에 기록하여 접수
일시와 접수번호를 표시한 다음
해당부서에 배부하고 수령인을
받는다.
2.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의 정
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문서시행통제

제 6 조 (통제를 요하는 문서) 통제

관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빼고는 그 관서의 전반적인 문서를 통제한다.

1. 비상시 작전 명령서
2. 인사발령에 관한 문서
3. 사법경찰관 직무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
4. 정보
5. 신원조사 및 사실조사 지시서
6. Ⅲ급 이상의 비밀문서
7. 납입고지서, 지출에 관한 청구서, 금전물품의 수발명령서 및 통지서
8. 금전 및 물품수령서
9. 기타 회계 사무에 속하는 서류

제 7 조 (문서통제요령 및 절차) 발

송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통제관에게 제출하고 통제관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통제하며 규정을 어긴 사항 및 미비점을 조정한후 검열인(별지 제 3 호 서식)을 찍는다.

1. 공문서 규정의 적정여부
2. 전결 사항의 적정여부
3. 문서 내용상 중복여부
4. 타문서와 중복여부
5. 근거 및 관계 서류의 확인
6. 첨부물의 확인
7. 해당 과, 제와의 협조여부
8. 처리기한의 경과여부
9. 보고기일 책정의 합리성여부

10. 경찰업무지침과 중복여부

제 8 조 (위반문서통제) 문서 통제중 정부 공문서 규정에 위반한 문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그 문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거나 잘못된점을 바로 잡아준다.
2. 규정을 어긴 문서는 공문서 규정 위반통지서(제 4 호서식)를 첨부하여 되돌려 보낸다.
3. 되돌려 받은 해당 과, 제에서 결재권자에게 보인후 지시받은 사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거나 잘못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4.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하거나 바로잡은 문서는 그 결과를 공문서위반 통지서 회신문에 기록하여 다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문서의 분류) 통제관은 문서를 시행방법에 따라 다음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법규문서(조례,규칙,훈령,예규)
2. 보고문서
3. 전신문
4. 전통
5. 회보
6. 수배문서

제 10 조 (보고문서의처리) ①하급관서에 대한 보고문서는 필요한 안전에 대해서만 승인 통제한다.

② 각종 보고 문서의 처리는 보고 통제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전신문) 전신문(테레타이프)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완전하다고 인정될때, 통제관의 검열인(별지제 3 호서식)과 전신인(서식제 5 호)을 적어 승인한다.

1. 전문의 필요성 여부
2. 전문의 긴급성 및 송달 순위의 적정여부
3. 전문의 중복여부
4. 틀린글자 및 불필요한 문구, 글자수(250자 이내)
5. 결재 사항 적정여부

제 12 조 (전통) 긴급하거나 간단한 내용의 일반문서는 전통으로 전달할수 있다.

제 13 조 (수배문서) 수배는 경찰 수배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긴급한 수배사항으로서 전신 및 경찰 FM 방송으로 처리한 사항을 빼고는 회보로서 수배한다.

제 14 조 (문서시행) 결재를 받은 문서는 문서통제반에 제출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발송한다.

1. 발송하여야할 문서는 문서발송대장(별지제 7 호서식)에 기록하는 동시에 발송번호를 붙이고 관인을 찍어 발송한다.
2. 제 1 호의 발송번호는 동일 문서

에 대하여는 동일 번호를 붙이고 새로성안한 문서는 새로운 번호를 붙인다.

3. 발송문서에는 발송인(별지제 6 호서식)을 공문서 첫장 우측빈자리에 적어 발송일시 표시한다.

4. 각 관서로부터 치안본부 및 각 시도 경찰관서에 발송되는 문서는 경찰국 문서통제반에 인제하고 공문서영수증(별지제 1 호서식)을 받아 해당관서에서 보관한다.

5. 경찰국 문서 통제반에서는 제 4 호에 따라 접수된 문서에 대하여는 공문서 영수증 2 통을 작성하여 1 통은 보관하고 1 통은 치안본부 또는 해당시·도 경찰관서에 문서와함께 발송하고 영수증 도착 순으로 보관한다.

제 4 장 회 보

제 15 조 (회보의 구분) ① 경찰국에서 발간하는 회보를 경찰국 회보라 하고 경찰서에서 발간하는 회보를 경찰서 회보라 한다.

② 회보는 발간차례대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 16 조 (회보의 서식) 회보의 서식은 정부공문서 처리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7 조 (회보의 발간회수) 회보는 수시로 발간한다.

제 18 조 (회보의 수록내용) 회보에는
각과·제에 속하는 다음각호의 내용
을 간단하게 수록한다.

1. 각급 상사의 훈시
2. 경찰전반에 관하여 알리는 사항
3. 경찰에 관한 상벌사항
4. 경찰전반에 걸쳐 실시하여야 할 사항
5. 주의 강조사항
6. 여러가지 수배사항

제 19 조 (회보기안) ① 각과·제에 배부
된 문서중 회보로서 시달하고자 하
는 내용은 회보수록안 (별지제 9 호서
식) 에 내용을 기록한 다음 문서통
제반에 제출한다.

② 자체적으로 회보로 시달하기 위하
여 기안하였을때에도 제 1 항과 같다.

제 20 조 (회보의 편집과 발간) 회보의
편집은 각과·제별로 구분하며 편집
된 회보안은 통제관의 주관하에 발
간한다.

제 21 조 (회보시달의 범위) 경찰국회보
는 경찰국 각과·제, 직할대, 경찰서

파출소에 시달하고 경찰서 회보는,
서의각과·제 및 파출소에 시달한다.

제 22 조 (회보의 처리) 회보는 구두로
알리거나 진직원이 공람하므로서 완
결된다. 완결된 회보는 목록을 붙여
접수된 순서대로 철한다.

제 5 장 당직중의 문서처리

제 23 조 (당직중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긴급을 요하는 문서를 접수하
였거나 발송할때에는 당직 책임자
의 통제를 받아 처리하고 기타 문
서는 다음날 근무교대와 동시에 문
서통제반에 인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사후통제) 제 23 조에 의하
여 처리한 문서는 해당과·제에서
통제관의 사후통제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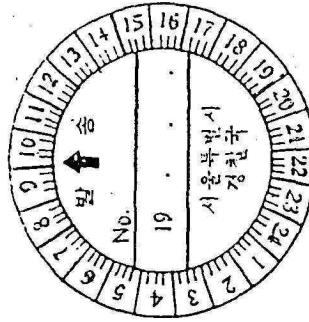
(제 1 호서식 문서처리인)

서울특별시경찰국		결재	
접수일시	19	지	
접수번호	제 호	시	
주 무 과		사	
담 당 자		항	
위임근거			
			19 년 월 일 까지 처리할것.

< 제 5 호서식 (전신인) >

전 신 타 자

< 제 6 호서식 (발송인) >



< 제 4 호서식 >

서 울 특 별 시

정무 130- <정비 446.447> 19 년 월 일

수신

제 목 공문서의 발송

다음 사유로 을 발송합니다.

가.

나.

다.

서 울 특 별 시 문 임 통 제 관

(제 9 호서식)

회 보 수 록 안

근 거 및 참 고 서 류	제	담당경위	경 감	제 장	과 장	국 장
	관계관회람					
통 제	인 쇄	대 조	보 관	수 록 사 항		
				월 일	번 호	입 수

수록내용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
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
령한다.

1983. 7. 7.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훈령제 594 호

서울특별시경찰국수사본부
운영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살인 기타
특별 중요사건 (이하 “ 중요사건 ”
이라 한다.) 이 발생한 경우에 경
찰의 기능을 통일적으로 강력하게
발휘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
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수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수사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사본부의 설치) ① 경찰국
장은 관내에서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5 조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
는 자에게 수사본부 설치를 명하
여 그 사건을 특별 수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본부에는 본부장, 부본부장, 수
사전임관, 홍보관, 분석연구관, 지도
관과 관리반 및 수사반을 둔다.

제 3 조 (수사본부의 설치장소) 수사
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
찰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수사본부의 설치지시) 경찰국
장이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때에
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2. 사건의 개요
3. 수사요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조 (수사본부장) ① 수사본부장 (이
하 “ 본부장 ” 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경
찰국장이 지명한다.

1. 경찰국 제 2 담당관
2. 관내에서 3 개이상의 수사본부
설치 대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경찰국 해당과장

3. 관할지 경찰서장

②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 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제 6 조 (부 본 장 및 수 사 전 임 관) ①수사본부의 부본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경찰국 제 2 담당관이 본부장이 되었을 때

가. 경찰국 해당과장

나. 관할지 경찰서장

2. 경찰국 해당과장 또는 관할지 경찰서장이 본부장이 되었을 때
가. 경찰국 해당 계장
나.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

②부본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수사본부 운영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인접경찰국, 경찰서간의 공조 수사지휘에 임한다.

③제 1 항의 편성에 있어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국, 경찰서 해당과의 경정 또는 경감을 수사전임관으로 하여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수사추진에 임한다.

④전임관은 따로 임명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제 3 항의 대상자 중에서 본부장이 지점한다.

⑤본부장은 본부요원을 편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경찰서장에게 수사요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⑥수사본부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장의 지시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타시도 본부장으로부터의 공조 제보는 성실하고 빠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홍 보 관) 홍보관은 본부장이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보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사건내용과 수사협조사항을 널리 알린다.

제 8 조 (분 석 연 구 관) 분석 연구관은 본부장이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보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건분석 연구 검토

2. 합리적인 수사계획 수립

3. 수사기록 판독 및 보완

4. 검증조서 작성 및 송치시까지 수사 지침 제시

제 9 조 (지 도 관) 지도관은 본부장이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보고하고 분석
연구관의 사건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반
원지도, 차출, 조정등 공조 수사로
범인을 빨리 검거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제 10 조 (관리반) 관리반의 반장은
본부장이 경감, 경위급으로 보고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건기록 및 부책관리
2. 압수물, 증거물등 보관관리
3. 공조수사와 수사상황 보고 시
달등 여러가지 관리 임무

제 11 조 (수사반) 수사반의 반장은
본부장이 경감, 경위급으로 보고하고
수사계획에 따라 여러개 반으로 편
성할 수 있으며 분담수사 활동으
로 증거 수집 및 범인 검거 활
동에 임한다.

제 12 조 (경찰서장의 임무) ① 경찰
서장은 수사본부 사건 수사에 있
어서 본부장이 지시한 수배, 조사
기타 필요한 수사를 빠르고 정확
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경찰서장 및 관제 소속장은
수사본부사건에 관련된 정보 기타

수사자료를 얻었을때에는 필요한 응
급조치를 하고 즉시 본부장에게 보
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초동수사반의 협력) 초동수
사반은 이미 출동한 사건에 대하
여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는 수사결과를 즉시 수사본부에 보
고하고 인계하는 동시에 그후의 수
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인접경찰서 해당과장의 협력)
수사본부사건 발생지의 인접경찰서
해당과장은 수사본부사건 발생을 알
았을 때에는 본부장의 특별한 지
시가 없더라도 빨리 범죄현장에 임
하여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수사회의)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때에는 수사본부 요원과 관
제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6 조 (갖추어야 할 서류) ① 수사
본부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
추고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건수사 지휘 및 진행부
2. 수사일지 및 수사요원 배치표

3. 수사보고서 철

4. 용의자 명부

5. 참고인 명부

②경찰국 또는 경찰서 해당과장은 제 1 항의 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한꺼번에 철하여 두고 연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수사 및 교양자료로 한다.

③제 1 항의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한 사건인 경우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후 1년으로 한다.

제 17 조 (수사본부의 해산) ①경찰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본부의 해산을 명한다.

1. 범인을 검거하였을때
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을때
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때

②경찰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경찰서장, 기타관계

소속장에게 그 본뜻을 알려야 한다.

제 18 조 (수사검토회) 본부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기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본부 관제자를 소집하여 수사검토회를 열고 수사실행의 경과를 반성 검토하는 등 수사기능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계속수사) ①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건수사를 계속 담당하여야할 해당과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관계서류, 증거물 등을 인계하고 수사중 유의하여야할 사항을 밝혀주어야 한다.

②제 1 항의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년 4 회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경찰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사본부편성요원명단

구분 직위	계급	성명	소속	현장약도
본부장				
부본부장				
수사전임관				
홍보관				
분석연구관				
지도관				
관리반장				
수사반장				

설치년월일	년월일
해산년월일	년월일
설치장소	

발생지 경관서

사건수사지휘 및 진행부

수 사 일 지 및 형 사 배 치 표

○○수사본부

년 월 일 요일

조 별	배 치 구 분	계 급	성 명	수 사 상 황	결 과

수 사 보 고 서

수신 : 수사본부장

제목 : 수사보고

○○사건의 수사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 사 용 이 점	수 사 내 용	비 고

○○수사본부

사법경찰관리

성 명

①

용 의 자 명 부

○○ 수사본부

월 일	용 의 자			연 령	용 의 내 용	취 리 월 일	결 과	담 당
	주 거	직 업	성 명					

참 고 인 명 부

○○ 수사본부

월 일	참 고 인			연 령	관 계 사 항	담 당
	주 거	직 업	성 명			

고	시
---	---

◎서울특별시고시제 328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지적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23 호 (83.4.16)로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 결정된 관악구신림동산 66-1 번지 일대 미림여중, 고교에 대하여 도시

1983. 7. 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학 교	관악구신림동산 66-1 일대	35,683 m^2	
변 경	"	관악구신림동산 66-1 일대	29,501.7 m^2	

◎서울특별시고시제 329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80 호 (83.5.27) 로 도시계획사업 (시장)시행허가된 가동구천호동 425-5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천호동 425-5 번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화랑종합시장 증축

다. 사업규모

당초 : 건축연면적 - 15,166.98 m^2 변경 : 건축연면적 - 15,366.58 m^2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25-5번지

(주)화랑산업대표이사 안 한 복

1983. 7. 2

서울특별시장

마. 착공 및 준공예정일

1) 착 공 일 : 변경허가일로부터
1 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 84.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
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서 : 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주소, 성명 : 생략

아. 변경시행허가 설제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30 호

육류연동가격 고시

육류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
부 훈령 제 490 호에 의거 서울특별
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

1983. 7. 4

서울특별시장

1. 육류연동가격

돼지고기 (정육 600 그램당) 1,800원

가. 내 역

2. 시행일

1983. 7. 5부터

◎서울특별시고시제 331 호

“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변경 (면적정정) 고시 ”

1. 건설부고시 제 184 호 (75.11.13)
동고시 제 55 호 (81.2.20), 동고시
제 155 호 (82.4.26) 및 제 346 호 (82.
9.24) 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된 천호 1 구역외 10
개 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4 조 및 제 8 조
(권한위임)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1 항 1 호에 의거 구역변경 (면적
정정)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
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
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3. 7. 2

서울특별시장

(단위 : m^2)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정정)	
천 호 1	강동구천호동산 6-1, 산 8-1 번지 일대	29,245	31,733	전고시 55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정정)	
창 신 1	종로구창신동 9번지일대	56,200	61,246	전고시 346
현 저 3	" 현저동 746번지일대	135,935	105,704	전고시 155
전 농 2	동대문구전농동 127번지일대	6,280	5,670	전고시 346
전 농 3	" " 산 6번지일대	114,952	83,192	"
답십리6	" 답십리 12번지일대	69,925	67,831	"
삼 선	성북구삼선동 485번지일대	39,155	28,496	"
신 길 3	영등포구신길동산 137번지 일대	26,740	26,528	"
신공덕	마포구신공덕동 1번지일대	92,850	72,099	"
본동 1	동작구본동 126번지일대	32,536	61,494	"
가 락 2	강동구가락동산 60-3번지 일대	9,917	13,202	전고시 184

나. 도 면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3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 서울시고시 제 41 호 (82.1.30) 로 사업시행허가하고 동고시 제 96 호 (82.3.5) 로 변경허가한 바 있는 도시계획사업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보인다.

1983. 7. 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 13-38 외 3 필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 대종고등공민학교 운동장 정지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 운동장정지 3,493㎡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대문구홍은동 13-38

재단법인 대종고유지재단

이사장 권태훈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1982.2.3

2) 준공예정일 (당초) 1982.5.31

(변경) 1984.5.31

바. 위치 및 평면계획도 : 별첨 (도면 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구 분	지 번	지 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명 세	비 고
사용할 토지	서대문구홍은동산1-503	임	서울시	없 음	
	" 13-38	대	"	"	
	" 13-30	대	"	"	
	" 13-79	대	"	"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 333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1. 건설부고시 제 77 호 (71.8.24)로 시설결정 및 자적승인된 강남구대치동 977-12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7 호 (83.6.15)로 14 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6 조 1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77-1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

다.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1,650 m^2
건축면적 : 819 m^2
건축연면적 : 3,367 m^2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 138-99

대치산업 최 종 경

마. 사업예정기간 : 착수년월일 83. 6

준공예정일 84.12.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거 관제인의 주
소, 성명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34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1. 건설부고시 제 137 호 (83.4.29)
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조서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
획법 제 21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하였기 이
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시설계획과와 관악구청 도시정
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5

서울특별시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학 교	관악구봉천동산175-5 일대	14,112 m^2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35 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

건설부고시 제 131 호 (76.8.21) 로
아파트지구 지정된 강남구 영동아파
트 3지구 (서초지구) 에 대하여 주택
건설촉진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
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한다.

1983. 7. 5

서울특별시장

1. 지구개발계획의 명칭 : 서울영동아
파트 3지구 (서초지구) 개발기본계획
2. 지구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
적 :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 일대
(1,491,261 m^2)
3. 지구개발계획의 개요

토 지 이 용 계 획 서

1. 지구면적표

(단위 : m^2)

계	3-1 지구	3-2 지구	3-3 지구	3-4 지구	비 고
1,491,261	264,275	548,223	262,622	416,141	변 경 없 음

2.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	
계	1,491,261	100	1,491,261	100	
주 택 용 지	963,054	64.6	1,009,215	67.6	
주 구 중 심	47,662	3.2	36,357	2.4	
분 구 중 심			19,194	1.3	
학 교 용 지	139,376	9.3	136,462	9.2	
공 원 용 지	38,022	2.5	120,931	8.1	시 설 녹 지 99,455 포함
도 로 용 지	138,466	9.3	1169,102	11.4	
유 치 원	5,640	0.4			주 택 용 지 에 포함
아 동 공 원	24,260	1.6			주 택 용 지 에 포함
시 설 녹 지	125,781	8.4			공 원 용 지 에 포함
공 급 처 리	9,000	0.7			주 택 용 지 에 포함

주 구 별 면 적 표

1. 3-1 주구면적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주 구 면 적	264,275	100	264,275	100	
주 구 중 심	8,700	3.3	4,132	1.6	
분 구 중 심	-	-	1,667	0.6	
주 구 용 지	162,615	61.4	155,545	58.9	
학 교 용 지	32,500	12.3	33,302	12.6	
공 원 용 지	4,675	1.8	24,413	9.2	
도 로 용 지	14,580	5.5	45,216	17.1	
유 치 원	1,000	0.4	-	-	주택용지에 1,322 포함
아 동 공 원	4,704	1.8	-	-	어린이놀이터시설로 대체
시 설 녹 지	31,901	12.0	-	-	공원용지 22,373 포함
공 급 처 리	4,000	1.5	-	-	주택용지에 포함

2. 3-2 주구면적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주 구 면 적	548,223	100	548,223	100	
주 구 중 심	18,762	3.4	13,319	2.4	
분 구 중 심	-	-	2,000	0.4	
주 택 용 지	396,439	72.2	419,871	76.6	
학 교 용 지	28,876	5.3	28,876	5.3	
공 원 용 지	17,373	3.2	22,980	4.2	
도 로 용 지	61,177	11.2	61,177	11.2	
유 치 원	1,200	0.2	-	-	주택용지에 582 포함
아 동 공 원	6,416	1.2	-	-	어린이놀이터시설로 대체
시 설 녹 기	17,980	3.3	-	-	공원용지에 17,980 포함

3. 3-3 주구면적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주 구 면 적	262,622	100	262,622	100	
주 구 중 심	9,200	3.5	10,080	3.8	
분 구 중 심	-	-	5,884	2.2	
주 구 용 지	152,870	58.2	170,396	64.9	
학 교 용 지	29,000	11.0	26,545	10.1	
공 원 용 지	5,000	1.9	25,142	9.6	
도 로 용 지	24,575	9.4	24,575	9.4	
유 치 원	1,000	0.4	-	-	주구중심내 설치로폐지
야 동 공 원	4,531	1.7	-	-	어린이놀이 터로 대체
시 설 녹 지	34,446	13.1	-	-	공원용지에 17,648 포함
공 급 처 리	2,000	0.8	-	-	주택용지에 포함

4. 3-4 주구면적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주 구 면 적	416,141	100	416,141	100	
주 구 중 심	11,000	2.6	8,826	2.1	
분 구 중 심	-	-	9,643	2.3	
주 택 용 지	251,530	60.4	263,403	63.3	
학 교 용 지	49,000	11.8	47,739	11.5	
공 원 용 지	10,974	2.6	48,396	11.6	
도 로 용 지	38,134	9.2	38,134	9.2	
유 치 원	2,440	0.6	-	-	주택용지에 2,853 포함
아 동 공 원	8,609	2.1	-	-	어린이놀이 터시설로대체
시 설 녹 지	41,454	10.0	-	-	공원용지 41,454 포함
공 급 처 리	3,000	0.7	-	-	주택용지에 포함

5. 지구개발계획도의 배치관서 및 열람방법

배치방법 : 건설관리국 주택기획과 방 법 : 개별방문 열람

◎서울특별시고시제 336 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건설부고시 제 131 호 (76.8.21) 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
동아파트 1 지구 (반포지구) 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20 조 제 2 항
의 규정에 따라 개발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

1983. 7. 5

서울특별시장

1. 지구개발계획의 명칭 : 서울 영동아파트 1 지구 (반포지구) 개발 기본
계획

2. 지구개발 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강남구반포동 일대 (면적 : 1,897,883 m^2)

3. 지구개발 계획의 개요

토 지 이 용 계 획 서

1. 지구 면적표

(단위 : m^2)

계	1 - 1 지구	1 - 2 지구	1 - 3 지구	1 - 4 지구	1 - 5 지구	비 고
1,897,883	355,585	189,624	436,309	624,345	292,000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계	1,897,883	100	1,897,883	100	
주 택 용 지	1,200,296	63.2	1,258,085	66.3	
지 구 중 심	40,800	2.2	51,866	2.7	
주 구 중 심	46,875	2.5	55,614	2.9	
분 구 중 심			22,163	1.2	
학 교 용 지	215,638	11.4	208,237	11.0	
공 원 용 지	57,563	3.0	154,363	8.1	
도 로 용 지	155,255	8.2	147,550	7.8	
유 치 원	7,127	0.4			주택용지에 포함
아 동 공 원	40,684	2.1			"
시 설 녹 지	115,045	6.1			공원용지에 포함
공 급 처 리	18,600	0.9			주택용지에 포함

주 구 별 면 적 표

1. 1-1 주구 면적

(단위 : m^2)

구 분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주 구 면 적	355,585	100	355,585	100	
주 구 중 심	8,800	2.5	11,691	3.3	공공용지 1,320 포함 종교용지 4,403
분 구 중 심			8,069	2.3	
주 택 용 지	239,150	67.3	246,697	69.4	
학 교 용 지	47,500	13.3	47,130	13.2	
공 원 용 지	6,380	1.8	22,318	6.3	시설녹지 18,390 포함.
도 로 용 지	19,680	5.5	19,680	5.5	
유 치 원	1,200	0.3			주택용지에 포함
아 동 공 원	8,185	2.3			어린이놀이터시설로 대체
시 설 녹 지	18,390	5.2			공원용지에 포함
공 급 처 리	6,300	1.8			주택용지에 포함

2. 1-2 주구 면적

(단위 : m^2)

구 분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주 구 면 적	189,624	100	189,624	100	
주 구 중 심	6,000	3.2	5,315	2.8	
주 택 용 지	139,275	73.4	138,384	73.0	
학 교 용 지	24,800	13.0	35,310	18.6	도시계획 시설
공 원 용 지	4,500	2.4	1,140	0.6	도시계획 시설
도 로 용 지	9,475	5.0	9,475	5.0	도시계획 시설
유 원	1,000	0.5			주택용지에 포함
아 동 공 원	2,874	1.5			어린이놀이터로 대체 (주택용지에 포함)
공 급 처 리	1,700	1.0			주택용지에 포함

3. 1-3 주구 면적표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주 구 면 적	436,309	100	436,309	100	
지 구 중 심	40,800	9.4	51,866	11.9	
주 구 중 심	8,000	1.8	6,128	1.4	
분 구 중 심			2,000	0.5	
주 택 용 지	231,925	53.2	247,429	56.7	
학 교 용 지	52,838	12.1	45,067	10.3	도시계획 시설
공 원 용 지	17,990	4.1	29,169	6.7	시설녹지 20,569 포함
도 로 용 지	51,150	11.7	54,650	12.5	도시계획시설
유 원	1,350	0.3			주택용지에 포함
아 동 공 원	8,387	1.9			어린이놀이터로 대체
시 설 녹 지	20,569	4.7			공원용지에 포함
공 급 처 리	3,300	0.8			주택용지에 포함

4. 1-4 주구 면적표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주 구 면 적	624,345	100	624,345	100	
주 구 중 심	16,075	2.6	19,191	3.1	
분 구 중 심			7,838	1.3	
주 택 용 지	428,495	68.6	443,618	71.0	
학 교 용 지	61,500	9.8	51,200	8.2	도시계획 시설
공 원 용 지	23,693	3.8	45,906	7.3	시설녹지 28,561 포함
도 로 용 지	42,250	6.8	56,592	9.1	도시계획시설
유 치 원	2,400	0.4			주택용지에 포함
아 동 공 원	16,071	2.6			어린이놀이터로 포함 (주택용지에 포함)
시 설 녹 지	28,561	4.6			공원용지에 포함
공 급 처 리	5,300	0.8			주택용지에 포함

5. 1 - 5 주구 면적표

(단위 : m^2)

구 분	변경전	%	변경 후	%	비 고
주구면적	292,020	100	292,020	100	
주구중심	8,000	2.7	13,289	4.6	
분구중심			4,261	1.5	
주택용지	161,451	55.3	181,957	62.3	
학교용지	29,000	9.9	29,530	10.1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	5,000	1.7	55,830	19.1	시설녹지 47,525 포함
도로용지	32,700	11.2	7,153	2.4	도시계획시설
유치원	1,177	0.4			주택용지에 포함
아동공원	5,167	1.8			어린이놀이터로 대체
시설녹지	47,525	16.8			공원용지에 포함
공급처리	2,000	0.7			주택용지에 포함

4. 지구개발 계획도의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비치방법 : 건설관리국 주택기획과

방 법 : 개별방문 열람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7 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76.8.21) 로 아파트지구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아파트 4 지구 (청담, 도곡지구) 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

1983.7.5.

서울특별시 장

1. 지구개발 계획의 명칭 : 서울 영등 아파트 4 지구 (청담 도곡지구)

개발 기본계획

2. 지구개발 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일부 및 도곡동 일대

(923,416 ㎡ , 당초면적 보다 8,496 ㎡ 감소)

3. 지구개발 계획의 개요

토 지 이 용 계 획 서

1. 지구면적표

(단위 : m^2)

구 분 \ 지구별	제	4 - 1 지구	4 - 2 지구	4 - 3 지구
변 경 전	931,912	105,547	302,918	523,447
변 경 후	923,416	105,547	294,422	523,447
비 고	4 - 2 지구 8,496 제외	변경 없음	우량단독주택지역 8,496 제외	변경 없음

2. 토지이용 계획 총괄표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제	931,912	100	923,416	100	4 - 2 지구 우량단독 주택 지역 8,496 제외
주택용지	702,150	75.34	714,877	77.2	주택용지에 포함. 주택용지에 포함. 주택용지에 포함. 공원용지에 포함.
지구용지	32,399	3.48	22,297	2.41	
분구중심			7,807	0.84	
학교용지	60,168	6.46	60,168	6.52	
공원용지	4,560	0.49	12,909	1.4	
도로용지	105,358	11.3	105,358	11.41	
유치원	2,400	0.26	—	—	
아동공원	15,927	1.71	—	—	
공급처리	1,000	0.11	—	—	
시설녹지	7,950	0.85	—	—	

주 구 별 면 적 표

1. 4 - 1 주구 면적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주구면적	105,547	100	105,547	100	
주구중심	3,630	3.44	3,686	3.44	
주택용지	80,734	76.49	80,452	76.23	
공원용지	—	—	12,909	12.23	
도로용지	8,500	8.05	8,500	8.05	
아동공원	3,733	3.54	—	—	주택용지에 3,733 포함
공급처리	1,000	0.95	—	—	" 1,000 "
시설녹지	7,950	7.35	—	—	" 7,950 "

2. 4 - 2 주구 면적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주구면적	302,918	100	294,422	100	우량단독 주택지역 (8,496 제외)
주구중심	12,307	4.06	6,139	2.09	
분구중심			1,448	0.49	
주택용지	256,761	84.76	254,923	86.58	
공원용지					
도로용지	31,912	10.54	31,912	10.84	
아동공원	1,938	0.64	—	—	주택용지에 1,938 포함.

3. 4 - 3 지구 면적

(단위 : m^2)

구 분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지구면적	523,447	100	523,447	100	
지구중심	16,462	3.15	12,472	2.38	
분구중심	—	—	6,359	1.22	
주택용지	364,655	69.66	379,502	72.5	
학교용지	60,618	11.44	60,168	11.49	
공원용지	4,560	0.87	—	—	주택용지로 개발
도로	64,946	12.41	64,946	12.41	
유치원	2,400	0.46	—	—	주택용지에 2,400 포함.
아동공원	10,256	1.96	—	—	" 10,256 "

4. 지구개발 계획도의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비치방법 : 건설관리국 주택기획과

방 법 : 개별 방문열람.

◎서울특별시고시제 338 호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한일은행분구)
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05 호 (78.8.11)로 실시계획인가된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한일은행분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7.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기간

당초 : 78.7.-83.6.30

변경 : 78.7.-84.5.31

나. 가사용 기간

당초 : 81.8.12-83.6.30

변경 : 81.8.12-84.5.31

다. 사업의 규모

◎서울특별시고시제 33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44 호 (77.5.11)로 학교 변경 결정 (추가)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491 호 (82.12.2) 로 14 일간 이해 관계인에게 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한 강남구 반포동 753 번지의 1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 및 6 조 1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7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753 번지의 1 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구 분	기 준	금 회 계
대 지 면 적	42,012 m^2	42,012 m^2
건 축 면 적	4,206.3 m^2	218 m^2 4,424.3 m^2
건 축 연 면 적	18,860.5 m^2	304 m^2 19,164.5 m^2

라.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753 번지 학교법인 일주
학원 이사장 이임용

마. 사업예정기간

- 착수년월일 - 83. 8. 1
- 준공예정일 - 83. 9.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
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66 호

제2종전기공사사업면허갱신공고 (제4차)

전기공사법 제 5 조제 3 항의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공
사업 면허를 갱신 발급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한다.

1983.7.4

서울특별시장

다 음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유효기간
69	양지종합건설	윤 덕 길	중구충무로 4 가 95-1	83.7.20- 88.7.19
71	삼창공영 (주)	임 상 은	" 북창동 71-2	"
74	금화종합건설공사	최 완 봉	" 인현동 2 가 184-27	"
79	상광전기 (주)	이 상 길	" 신당 5 동 25-9	"
		최 광 홍		
91	대창전력건설공사	김 남 호	" 황학동 2478	"
95	해 성 사	홍 병 표	" 송인동 98-1	"
102	대원종합전기	이 언 락	강서구화곡동 970-32	"
105	풍전산업(주)	권 영 달	" 인현동 2 가 73-1	"
108	경성전기건설공사	하 성 근	" 인현동 100-4	"
111	삼립전업사	곽 종 환	" 신당동 94-1	"
116	영 화전업사	정 영 대	영등포구영등포동 2 가 13	"
118	현대전기공사	고 광 래	중구신당동 267-44	"
122	삼우삼전설	유 회 상	중구장충동 2 가 173-2	"
125	유신토건 (주)	김 동 길	영등포구신길동 1329	"

면허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유효기 간
129	우신전업사	이 창 영	중구신당동 94-1	83. 7.24- 88. 7.23
138	삼능전기공사	정 상 무	영등포구영등포동 1가 143-3	"
140	세호전업사	이 최 희	중구황학동 2478	"
144	우림종합건설(주)	문 재 경	" 남산동 2가 27-2	"
145	우림전기공사	김 영 석	" 을지로 3가 95-12	"
152	남성기전(주)	최 전 남	" 충무로 2가 50-6	"
153	관성전기(주)	박 만 석	성북구보문동 6가 104	83. 7.26- 88. 7.25
154	선우전기건설공사	정 봉 조 조 남 국	강서구화곡동 1071-19	88. 7.14- 88. 8.13

◎서울특별시공고제 370 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6 호 (83.1.25) 로 시행허가한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에 대하여 사업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3.7.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서초동

232-8호 (신번지 : 서초동 1338-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충무로 2가 24-23 은정빌딩(주)

대표이사 유택현

라. 사업시행기간 : 83.1.25-83.6.23

마.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389.3 m^2
- 건축면적 : 61.17 m^2
- 건축연면적 : 1,191.17 m^2

바. 허가근거 : 서울특별시고시 제 46 호 (83.1.25)

사. 준공도면 : 별첨 (생략) 끝.

◎서울특별시공고제 371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공사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 호 (83.1.13) 로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변경된 당구 관내 한강로 3 가 4-7 외 9 필지상 태양시장 증축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동법 제 85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제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 가 4-7 외 1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2) 명칭 : 태양시장 증축

다. 사업시행규모

1) 대지면적 : 15,939.2 m 중
8,748.8 m²

2) 건축물 증축연면적 : 3,154.86m²

라. 사업의 시행자

주소 : 서울시용산구한강로 2 가 16-1

성명 : 선인산업(주) 대표 전 선 환
마. 사업의 시행기간

1982.5.6-1983.6.30

바. 공사완료도면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372 호

서울역 - 서대문제 1 구역제 1 지구개발사업
시행인가변경을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6 호 (82. 3.10) 및 동고시 제 438 호 (82. 11.1)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된 서울역 - 서대문 제 1 구역 제 1 지구의 재개발사업 계획이 서울특별시고시 제 191 호 (83.4.2) 변경 결정되었기

2. 시행자인 (주)중앙일보사 (대표이사 이종기)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변경신청이 있어 동법제 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의 권한위임에 따라 동법제 15 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공고한다.

1983.7.5

서울특별시장

- 공 랑 개 요 - 가. 사업의 명칭 : 서울역-서대문제 1 구역제 1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위치 : 중구순화동 7-2외 160필지				다. 시행면적 : 22,060.3 ○ 대지면적 : 16,685.8 ○ 공공용지 : 5,374.5							
라. 건축계획 (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											
구		분		당		초		변		경	
건	축	면	적	5,201.75 m ²		5,250 m ² 이하					
건	폐	율		31.17 %		32 % 이하					
연	면	적		59,379.68 m ²		68,500 m ² 이하					
용	적	율		260.98 %		310 % 이하					
층	수			지상 18층, 지하 3층		지상 21층, 지하 3층					
주	용	도		업 무 시 설		업 무 시 설					

마. 시행자 : 중구서소문동 58-9 (주)중앙일보사 (대표이사 이종기)				◎서울특별시공고제 374 호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			
바.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 : 별첨 (생략)				건설업법 제 38조 제 1항 제 18호 및 국세징수법 제 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의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사. 시행기간 : 1982.3.10-1985.3.31				1983. 7. 5			
아. 공람기간 : 1983.7. 5-1983.8. 4				서울특별시장			
자. 공람장소 : 서울시청도시계획국재개발과							

- 다 음 -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근거법규
서울 13-333	한신공무(주)	권영중 오 옥	성동구자양동 616-27	83. 7. 5	국세채납	건설업법 38-1-18 및국세징수 법제 7-4
서울 03-112	(주)아진화학	오명룡	중구태평로2가 340	7. 5	"	"

면허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근거법규
강원 01-4 강원 02-9 강원 15-8	동영토건(주)	고태석	중구을지로1가37	7.5	국세채납	건설업법 38-1-18 및국세징수 법제 7-4

◎서울특별시공고제 37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동법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
다.

1. 서울특별시가 결정승인한 다음 도
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저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1983.7.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명칭	규 모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결정고시 일 자	지 고 시 적 일	비 고
수유4동61- 62외11필지	도시계획사업 (도로)여운 영묘역진입로 확장공사	B=8-6m L=154m	사업시 행인가 와동시	83. 12.30	서 고 72.6.30	서 고 72.6.39	소 로 1 류 2 호
월계2동502 의1외8필지	도시계획사업 (도로)광운 중고교집입로 포장공사	B=10 m L=270m	"	"			소 로
쌍문2동278	쌍문2동278 번지도로개설 공사	B=6 m L=80 m	"	"			소 로
수유2동367 -359번지	가오천복개 공사	B=15 m L=630m	"	"	건고2493 66.6.21	건고 27 72.12.12	종로2류 88번

나. 사업의 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다. 사용토지 수용할토지 (건물조서)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라.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마. 위치 및 계획평면도 별첨 (도면 생략)

바. 토지 (건물) 조서 및 도면은 도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한다.

1. 업체명 : 국제다이아몬드공업(주)

2. 소재지 : 서울 구로구신도림동291-187

3. 대표자 : 김 정 환

4. 허가번호 : 제 2597 호

5. 규격번호 : KSE-3107

6. 품 명 : 다이아몬드 코어비트

7. 종류등급 : 씨페이스셋트

8. 처분기간 : 공고일로부터 1 개월

9. 처분사유 : 지정지시 불이행

◎서울특별시공고제 376 호

KS 표시 정지 처분 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KS 표시 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3. 7. 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377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행정처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30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에 대한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28조 규정에 의거공고한다.

1983. 7. 7

서울특별시장

다 음

지정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	처분사유
용산-67	대림정화 기업사	한남동 557-12	이대용	지정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조제 2항 위반 (무단 폐업)
용산-73	원건업	갈월동 71-6	송범섭	지정취소	상 동 (무단전출)
용산-46	명우설비 공사	" 71-7	장명우	영업정지 6월 (83.7.10- 84.1.9)	동법제 27조제 2항 위반 (기능사미보유)

지정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	처분사유
용산-74	(주) 대경 엔지니어링	갈월동 8-71	최영식	영업정지 2월 (83.7.10 83.9.9)	동법제 27 조제 2 항 위반 (기사미보유)

◎서울특별시공고제 378 호

청산금납입 고지서공시송달공고

1. 당시가 사업시행하여 환지처분한
암사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징수청산금 납입고지서를 서울특별
시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사무처리
규칙 제 18 조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공시 송달한다.

1983. 7. 7

서울특별시장

아 래

가. 지구명 : 암 사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다. 납부기간 : '83.7.31 (일반환지)
'84.1.21 (감면중환지)

라. 공시송달사유 :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마. 공시송달대상토지별 청산명세 :
서울지구획정리과 강동구청도시
정비과

바. 기타 : 공시송달 대상토지소유자

께서는 당시 구획정리과에 오셔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시중은
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공고제 46 호

여의도 지번변경 확정공고

여의도동에 대하여 지적법 제 4 조 2
항에 의거 지번을 변경하여 83.8.1
일자로 시행할 것을 동법 제 40 조의
정한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확정 공고한다.

1983. 7. 2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 1983.7.2-1983.7.31
(30일간)
2. 확정시행일 : 1983. 8. 1
3. 사업명 : 여의도지번정리사업
4. 토지소재 : 영등포구 여의도동
5. 정리필수 : 466필
6. 신·구 지번조서 : 별지 기재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지적1계)에 문의)

신, 구지번조서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여의도동	1	84- 4	하 천	51,137	여의도동	1-29	14-11	대	1,511
"	1 - 1	1	대	330,579	"	-30	13-21	"	1,190
"	- 4	8- 1	도 로	57,799	"	-42	61- 2	"	8,264
"	- 5	8- 2	잡종지	19,511	"	-43	15-24	"	2,777
"	- 7	7- 5	제 방	2,615	"	-44	15-15	"	2,711
"	- 9	7- 6	도 로	1,775	"	-45	50	"	98,843
"	-10	7- 7	잡종지	529	"	-46	14- 8	"	1,190
"	-20	11	대	11,917	"	-47	14-24	"	1,190
"	-21	13	"	2,245	"	-48	15- 4	"	1,190
"	-22	13-11	"	684	"	-49	15-26	"	1,517
"	-23	14- 1	"	641	"	-50	15-12	"	727
"	-24	14-21	"	2,565	"	-52	15-13	"	774
"	-25	15	"	2,284	"	-53	14-34	"	1,488
"	-26	15-21	"	2,777	"	-54	14-32	"	992
"	-27	15-11	"	1,488	"	-55	14-35	"	992
"	-28	14-31	"	1,488	"	-56	14-12	"	1,488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의도동	1-57	14-14	대	992	여의도동	1-83	13-15	대	698
"	-58	11- 1	"	1,861	"	-84	13-17	"	704
"	-59	13- 6	"	1,983	"	-85	13-19	"	1,190
"	-60	15-22	"	7,934	"	-86	13-20	"	1,190
"	-61	15-23	"	1,983	"	-87	13-22	"	1,190
"	-62	14-15	"	2,460	"	-88	13-23	"	694
"	-63	14-27	"	1,190	"	-89	13-25	"	3,778
"	-64	13-26	"	721	"	-91	14-13	"	992
"	-68	15- 5	"	271	"	-92	14- 5	"	694
"	-69	15-25	"	324	"	-93	14- 7	"	727
"	-71	12- 5	"	1,653	"	-94	14- 9	"	1,190
"	-72	13-27	"	317	"	-95	14-25	"	671
"	-73	13- 1	"	1,322	"	-96	14-23	"	671
"	-75	13- 3	"	4,628	"	-97	14-33	"	2,440
"	-76	13-32	"	317	"	-98	15- 6	"	1,342
"	-77	13-29	"	314	"	-99	15- 1	"	678
"	-78	13-28	"	1,997	"	-100	15- 3	"	1,190
"	-82	13- 5	"	1,005	"	-101	40- 3	학교용지	11,481

동 명	지 번		자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자 목	면 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 의 도 동	1-103	30- 3	대	27,127	여 의 도 동	1-132	17	대	12,248
"	-104	40- 1	학교용지	17,478	"	-134	17-10	"	1,749
"	-105	43	대	3,696	"	-140	37	"	20,935
"	-106	44-11	"	1,928	"	-143	37- 1	"	6,011
"	-107	44- 1	"	962	"	-144	40	"	13,250
"	-108	44-21	"	962	"	-146	43- 5	"	1,005
"	-109	45-11	"	962	"	-148	44-31	"	959
"	-110	23	"	64,711	"	-150	44-27	"	959
"	-111	21- 2	"	16,830	"	-151	45-17	"	565
"	-113	24- 1	"	1,660	"	-152	46- 1	"	959
"	-114	25- 1	"	1,388	"	-154	45- 1	"	3,934
"	-115	25-11	"	4,830	"	-155	45	"	4,727
"	-116	33	"	27,081	"	-156	47	"	24,862
"	-117	35	"	2,271	"	-159	37- 2	"	13,936
"	-118	27	"	14,182	"	-163	38- 2	"	13,596
"	-123		"	43,042	"	-173	36- 2	"	1,012
"	-124	28- 1	"	12,146	"	-175	52	"	18,565
"	-129	28- 2	"	6,615	"	-177	30	"	11,570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의도동	1-179	20	대	14,743	여의도동	1-434	17-16	대	793
"	-184	16	"	30,678	"	-435	17-14	"	793
"	-186	17- 1	"	2,774	"	-436	17- 4	"	793
"	-189	11- 2	"	1,445	"	-437	17-12	"	793
"	-330	38- 1	"	10,167	"	-438	17- 2	"	1,759
"	-415	22	종교용지	46,465	"	-440	18- 1	"	15,717
"	-421	17- 3	대	2,522	"	-461	18- 2	"	2
"	-422	17-11	"	2,522	"	-466	18- 3	"	1,165
"	-423	17- 5	"	2,522	"	-470	18	"	73,662
"	-424	17- 7	"	2,522	"	-495	10- 1	"	1,709
"	-425	17-13	"	2,522	"	-496	10- 3	"	1,431
"	-426	17- 9	"	2,750	"	-497	10- 4	"	1,898
"	-428	17-20	"	793	"	-498	10- 2	"	1,907
"	-429	17- 8	"	793	"	-499	10	"	2,850
"	-430	17-18	"	793	"	-500	12- 1	"	1,130
"	-431	17-23	"	727	"	-501	12- 3	"	2,196
"	-432	17-21	"	793	"	-503	12	"	7,841
"	-433	17- 6	"	793	"	-508	43- 2	"	2,010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 의도동	1-509	43- 3	대	4,020	여 의도동	1-536	45-19	대	959
"	-516	43- 1	"	532	"	-537	45-20	"	959
"	-517	44- 3	"	860	"	-538	45-14	"	860
"	-518	44- 5	"	1,819	"	-539	45-18	"	856
"	-520	44- 6	"	959	"	-540	45-16	"	288
"	-521	44- 4	"	860	"	-541	45- 3	"	2,000
"	-522	44- 2	"	860	"	-550	45- 2	"	5,115
"	-523	44-	"	959	"	-560	46	"	27,335
"	-524	44-25	"	860	"	-573	44-33	"	909
"	-527	44-26	"	962	"	-574	44-35	"	1,864
"	-528	44-22	"	860	"	-576	44-37	"	955
"	-529	44-24	"	466	"	-577	44-36	"	909
"	-530	44-23	"	857	"	-578	44-34	"	906
"	-531	44-29	"	959	"	-579	44-32	"	959
"	-532	44-28	"	393	"	-580	44-15	"	919
"	-533	45-13	"	291	"	-581	44-13	"	919
"	-534	45-12	"	674	"	-582	44-14	"	1,930
"	-535	45-15	"	860	"	-584	44-12	"	919
"	-585	44-16	"	916	"	-613	35- 2	"	2,737
"	-588	24- 2	"	1,547	"	-614	35- 4	"	1,438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의도동	1-589	24- 3	대	1,974	여의도동	1-615	35- 7	대	1,438
"	-590	24- 5	"	1,640	"	-616	35- 8	"	1,438
"	-591	24- 4	"	1,398	"	-617	35- 5	"	3,739
"	-592	25- 8	"	367	"	-619	25- 5	"	800
"	-593	25- 4	"	902	"	-620	36- 1	"	3,104
"	-594	24	"	1,375	"	-621	34-11	"	1,201
"	-595	25-7	"	902	"	-622	35- 3	"	6,476
"	-596	25-3	"	902	"	-625	35- 6	"	2,159
"	-597	35-1	"	5,476	"	-626	25- 6	"	1,164
"	-602	25-2	"	899	"	-628	26- 3	"	1,160
"	-603	25	"	1,388	"	-631	26- 1	"	1,385
"	-605	25-13	"	711	"	-633	26- 5	"	1,709
"	-606	25-12	"	744	"	-634	26- 4	"	2,579
"	-607	25-15	"	1,385	"	-635	26- 2	"	1,858
"	-608	25-14	"	1,488	"	-636	26	"	1,858
"	-609	36- 3	"	5,354	"	-637	36	"	8,783
"	-642	11- 3	"	251	"	-706	53-12	"	317
"	-643	13-31	"	2,777	"	-707	53-14	"	334
"	-	13-30	"	522	"	-708	53-16	"	334
"	-	40- 5	"	89	"	-709	53-18	"	334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 의도동	1-650	50- 1	대	2,314	여 의도동	1-710	53-20	대	334
"	_651	50- 2	"	4,595	"	-712	53-13	"	1,779
"	_652	50- 3	"	5,385	"	-714	54- 3	"	3,928
"	_681	21- 1	"	16,929	"	-721	54	"	3,956
"	_682	43- 6	"	496	"	-727	54- 1	"	634
"	_683	30- 1	"	19,835	"	-739	54- 5	"	331
"	_687	53-19	"	1,004	"	-741	54- 8	"	2,004
"	_689	53-17	"	502	"	-745	54-10	"	331
"	_690	53-11	"	502	"	-746	54- 6	"	321
"	_691	53-15	"	489	"	-747	54- 4	"	3,290
"	_692	53- 3	"	489	"	-752	54- 2	"	1,304
"	_696	53- 1	"	2,993	"	-761	54- 9	"	321
"	-697	53	"	1,910	"	-762	54 -7	"	331
"	-702	53-2	"	334	"	-766	55- 2	"	3,306
"	-767	56	"	17,617	"	-798	14-26	"	721
"	-769	53-22	"	334	"	-811	15-14	"	893
"	-771	21	"	9,917	"	-812	15-16	"	860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 의 도 동	1-772	13- 2	대	992	여 의 도 동	1-815	31	대	17,795
"	-775	13- 4	"	992	"	-830	36- 6	"	1,012
"	-776	13-24	"	648	"	-831	36- 7	"	1,058
"	-777	13-13	"	684	"	-832	36-10	"	1,064
"	-778	13-16	"	628	"	-833	36- 4	"	1,144
"	-779	13-14	"	688	"	-834	36- 9	"	1,064
"	-780	13-12	"	638	"	-835	36- 5	"	1,144
"	-781	14	"	612	"	-839	48- 1	"	1,210
"	-782	14- 2	"	641	"	-840	48- 2	"	1,686
"	-783	14- 3	"	661	"	-841	48- 3	"	1,220
"	-784	14- 6	"	615	"	-842	48	"	2,916
"	-785	15- 2	"	664	"	-863	23- 1	"	1,405
"	-788	14-20	"	671	"	-864	11-12	"	1,055
"	-796	13-18	"	645	"	-866	11-13	"	826
"	-797	14- 4	"	648	"	-867	11-14	"	826

72-66

제 973 호

시

보

1983.7.1

동 명	자 번		지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의도동	1-868	11-16	대	826	여의도동	1-897	32	대	15,537
"	-869	11-18	"	826	"	-898	45-5	"	1,441
"	-870	11-15	"	826	"	-900	62-1	"	706
"	-871	11-17	"	4,132	"	-902	32-1	"	992
"	-873	11-11	"	605	"	-903	85	하 천	85,494
"	-876	28- 3	"	6,366	"	-904	86-6	"	8,747
"	-884	36- 8	"	1,061	"	-905	86-5	"	27,660
"	-885	62-2	"	1,408	"	-907	8 -3	제 방	8,549
"	-887	55	"	7,934	"	-909	7	"	24,332
"	-888	55-1	"	5,289	"	-917	8 -4	도 로	6,205
"	-889	51	"	18,565	"	-919	7 -1	"	12,912
"	-890	40-2	"	10,413	"	-924	7 -2	잡종지	695
"	-891	4 -1	도	1,719	"	-925	7 -4	"	2,914
"	-892	41	대	31,699	"	-926	1 -1	도	26,102
"	-893	42	"	34,879	"	-986	82-7	"	430
"	-894	41-1	"	1,663	"	-989	30-2	대	35,507.9
"	-895	41-2	"	1,650	"	-990	21-3	"	1,127
"	-896	42-1	"	1,484	"	-991	21-4	"	1,127

등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등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 의 도 동	1-993	21-5	대	99	여 의 도 동	1-1051	34	대	2,601
"	-996	40-4	"	9,395	"	-1052	34-2	"	2,401
"	-1006	10-5	"	529	"	-1053	34-4	"	2,401
"	-1007	43-4	"	8,912	"	-1054	34-6	"	2,401
"	-1029	17-22	"	66	"	-1055	34-8	"	3,602
"	-1030	62	"	9,114	"	-1057	16-1	"	9,110
"	-1034	38-3	"	1,032	"	-1058	34-10	"	1,201
"	-1037	38	"	11,978	"	-1059	16-2	"	8,926
"	-1039	27-1	"	6,612	"	-1062	14-28	"	56
"	-1040	27-2	"	10,142	"	-1063	1-2	도	34,687
"	-1041	61-1	"	8,264	"	-1064	1-3	"	5,740
"	-1042	61	"	20,208	"	-1065	1-4	"	7,587
"	-1043	60	"	20,206	"	-1066	1-5	"	15,743
"	-1046	7-3	잡종지	601	"	-1067	1-6	"	43,631
"	-1047	34-3	대	2,401	"	-1068	1-8	"	8,410
"	-1048	34-5	"	2,401	"	-1069	1-7	"	11,546
"	-1049	34-7	"	3,601	"	-1070	2	"	361,989
"	-1050	34-9	"	2,601	"	-1971	2-1	"	11,161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 의 도 동	1-1072	2-2	도	15,081	여 의 도 동	1-1090	4-3	도	3,370
"	-1073	2-3	"	10,633	"	-1091	4-4	"	10,634
"	-1074	2-4	"	1,713	"	-1092	4-5	"	9,107
"	-1075	2-5	"	1,714	"	-1093	4-6	"	16,046
"	-1076	2-6	"	29,852	"	-1094	4-7	"	1,215
"	-1077	2-7	"	6,213	"	-1095	5	"	36,241
"	-1078	2-8	"	10,902	"	-1096	5-2	"	9,801
"	-1079	3	"	44,818	"	-1097	5-3	"	2,419
"	-1080	3-1	"	3,690	"	-1098	5-4	"	2,457
"	-1081	3-2	"	10,673	"	-1099	5-5	"	1,665
"	-1082	3-3	"	4,323	"	-1100	6	"	16,968
"	-1083	3-4	"	5,948	"	-1101	34-1	대	2,401
"	-1084	3-5	"	7,858	"	41-1	84-1	하 천	122,417
"	-1085	3-6	"	15,090	"	41-34	84	"	47,663
"	-1086	3-7	"	3,660	"	41-35	83	"	158,784
"	-1087	3-8	"	1,025	"	46-1	84-3	"	51,888
"	-1088	4	"	27,300	"	56-20	84-2	"	133,382
"	-1089	4-2	"	10,087	"	46-23	83-1	"	168,281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의도동	46-24	83-2	하 천	43,722	여의도동	128-5	8	제 방	81,800
"	46-25	82-4	"	6,648	"	167-1	4-8	잡종지	337
"	46-26	82	"	48,169	"	-2	5-6	"	1,845
"	64-1	83-4	"	69,269	"	-4	5-7	제 방	11,387
"	64-2	81-6	"	118,803	"	-6	57-1	하 천	555
"	64-5	83-3	"	31,567	"	-28	4-9	제 방	25,282
"	-6	82-3	"	19,218	"	168-4	7-9	도 로	106
"	-7	82-1	"	185,699	"	-5	7-8	잡종지	311
"	-8	82-2	"	105,031	"	287-7	9-2	하 천	2,688
"	-9	81-2	"	109,891	"	341-1	82-5	"	4,532
"	-12	80-5	"	23,766	"	-4	81-1	"	74,511
"	-13	80-4	"	5,260	"	-5	82-6	"	1,736
"	92-2	2-9	잡종지	7,146	"	-30	9-1	"	952
"	-7	1-9	"	450	"	-32	81-4	"	26
"	-9	1-10	도 로	469	"	-42	81	"	23,257
"	-12	1-11	제 방	1,226	"	453-6	19-1	"	34,076
"	128-3	3-9	도 로	20,512	"	475-1	19-2	"	4,618
"	-4	2-10	제 방	6,515	"	490	70	"	145,352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여의도동	491	86-1	하 천	191,798	여의도동	510	19	하 천	65,045
"	492	86	"	125,268	"	511	29-1	"	45,931
"	493	85-1	"	982,797	"	512	80-3	"	122,003
"	494	85-5	"	39,630	"	513	80-2	"	133,504
"	495	63	"	61,352	"	514	80-1	"	64,218
"	496	84-8	"	93,643	"	515	80	"	11,653
"	497	84-7	"	66,426	"	516	59	"	13,603
"	498	84-6	"	77,749	"	517	58	"	18,261
"	499	84-5	"	13,782	"	518	85-4	"	74,093
"	500	57	"	30,033	"	519	85-3	"	200,000
"	501	83-5	"	11,825	"	520	85-2	"	200,000
"	502	49	"	66,681	"	521	86-4	"	100,000
"	503	82-8	"	94,506	"	522	86-3	"	200,000
"	504	29	"	31,418	"	523	86-2	"	200,000
"	505	39	"	70,833	"	524	87-4	"	52,053
"	506	81-7	"	89,623	"	525	87-3	"	150,331
"	507	81-5	"	8,264	"	526	87-2	"	20,000
"	508	81-3	"	30,311	"	527	87-1	"	200,000
"	509	9	"	65,755	"	528	87	"	143,798

사

령

○ 1983 년 7 월 4 일 자

령 제 256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길량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통제전산담당관	지방별정직 8 급 상당 (전산처리사)
정양숙	"	군로청소년회관	지방별정직 7 급 상당 (상 담 원)

○ 1983 년 7 월 5 일 자

령 제 257 호

내 무 국 정 효 성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의거 휴직을 명함.

○ 1983 년 7 월 6 일 자

령 제 258 호

구로구토목과 조 서 환
지방행정주사보

내무국 의전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방행정주사보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 1983 년 7 월 6 일 자

령 제 259 호

이 병 훈

전설관리국 2 호봉
지방토목기사시보

김 만 진

목동지구개발사업소 7 호봉
지방건축기사시보

오 기 수

시립대학 3 호봉
지방사서서기시보

김 재 정

산업경제국 4 호봉
지방서원시보 (기능직 8 등급)

○1983 년 7 월 7 일자 령제 260 호

통계전산담당관 이 은 희
지방별정직 7급상당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령제 261 호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김 청 우
지방축산기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파견
(83.7.7 - 83.9.30)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이 재 용
지방수의사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파견
(83.7.7-83.9.30)

○ 휘 보
공무원 사망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이 현 규
지방수의사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파견
(83.7.7 - 83.9.30)

용 산 구 주 영 근
지방농림기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파견
(83.7.7 - 83.9.30)

강 서 구 전 호 택
지방농림기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파견
(83.7.7 - 83.9.30)

○1983 년 7 월 9 일자 령제 262 호

마포구공원녹지과장 김 종 해
지방행정사무관

대법원 판결 (사건 83 누 53:83.6.14)
에 의거 81.10.13 자 정직 3월처분을 동
일자로 취소함.

소 속	직 명	성 명	사망일시	사 망 장 소	사망원인
강남구내곡동	지방경주사보	최 수 영	83.6.29	성동구성수2가 동 자택	암